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9월 일 (제 회)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양희 의원의 6명
발의연월일	2012년 8월 22일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2년 8월 22일

발의자 : 김양희, 강현삼, 김동환,
김봉희, 박상필, 최병운,
하재성(7명)

1. 개정이유

충북문화관 개관에 따라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작품의 구입 조문 삭제

- 작품의 구입에 대한 조문을 삭제(제12조 삭제)

나. 위탁기간의 조정(안 제13조)

- 현행 : 2년 기간에 필요한 경우 연장
- 개정 : 2년 기간에 1회에 한하여 연장

다. 이용자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제2조제5호 : “이용자”란 시설내의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 ~의 규정에 따라 → ~에 따라
- 대한 → 대하여
- 범위 내에서 → 범위에서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나.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다. 협의 : 문화관광환경국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였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 중 “시설”을 “문화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용자”란 시설내의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본문 중 “문화관의 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①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나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수탁업체가”를 “수탁기관이”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전시시설 등”을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설 및 설비”를 “시설”로 한다.

제10조 제목을 “문화관 시설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설설치 또는 설비를”을 “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

치·변경한 시설물 및 설비는”을 “변경한 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물”을 “변경한 시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한”을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를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필요한 경우”를 “1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15조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문화관의 시설물”을 “문화관 시설”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를 “취소하고자”로 한다.

- ① 도지사는 문화관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며, 수탁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중 “시설물”을 “시설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시설사용”이란 제1호의 <u>시설</u>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는 <u>자</u>를 말한다. 4. 생략 (신설)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시설사용”이란 제1호의 <u>문화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u>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는 <u>사람 또는 단체</u>를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5. “이용자”란 <u>시설내의 자료</u>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p>제4조(시설사용) <u>문화관의 시설</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p>제4조(시설사용) <u>시설</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p>제5조(사용허가) ① <u>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나 행사 등을 위해 문화관의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생략 ③ <u>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u> 	<p>제5조(사용허가) ① <u>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나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u>

제6조(사용료)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생략

1. 생략
2. 수탁업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3. 생략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공공질서와 건전한 풍속을 해할 때
3. 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할 때
4.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문화관 시설물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문화관의 기본구조물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시설설치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6조(사용료)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3.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공공질서와 건전한 풍속을 해할 경우
3.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할 경우
4.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문화관 시설의 변경)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문화관의 기본구조물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p>② 제1항에 따라 <u>설치·변경한 시설물</u> 및 설비는 도지사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 후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관계자로 하여금 시설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기간 만료 후에도 <u>시설물을 방치하는</u> 때에는 해당 시설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u>변경한 시설</u>은 도지사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 후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관계자로 하여금 시설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기간 만료 후에도 <u>변경한 시설을 방치하는</u> 때에는 해당 시설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p>
<p>제11조(자료의 열람) ① 도지사는 문화관 소장자료에 <u>대한</u> 열람 또는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따라</u>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대여허가조건, 유·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제11조(자료의 열람) ① 도지사는 문화관 소장자료에 <u>대하여</u> 열람 또는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에 따라</u>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대여허가조건, 유·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제12조(작품의 구입) 문화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p>	<p>삭제</p>
<p><u>제13조(작품의 기증)</u> 생략</p>	<p><u>제12조(작품의 기증)</u> (현행과 같음)</p>
<p><u>제14조(변상조치 및 손해배상)</u> 생략</p>	<p><u>제13조(변상조치 및 손해배상)</u> (현행과 같음)</p>
<p><u>제15조(위탁)</u> 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u>필요한 경우</u> 연장할 수 있다.</p>	<p><u>제14조(위탁)</u> 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장할 수 있다.</p>

<p>제16조(운영 및 관리비 지원) 문화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5조(운영 및 관리비 지원) 문화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7조(수탁자의 책무)</p> <p>① ~ ② 생략</p> <p>③ 문화관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수탁자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p>	<p>제16조(수탁자의 책무)</p> <p>① ~ ② 생략</p> <p>③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수탁자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p>
<p>제1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문화관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p>	<p>제1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문화관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며, 수탁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19조(양도 및 구조변경의 금지)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물 구조 또는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p>	<p>제18조(양도 및 구조변경의 금지)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 또는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p>

제20조(작품의 보관 및 관리) 생략

제21조(시행규칙)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작품의 보관 및 관리) (현행과 같음)

제20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